

나. 피고는 자수후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에서 경사 김낙현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원고를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사건으로 수배된 백원담의 행방 등에 관해 집요한 질문을 하였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며 취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3일동안 부모등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 폐쇄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없이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취조를 당하였고, 3일이 지나 부모와 처음 면회를 했을 당시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 같이 고문시키려 사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 당시 경찰은 부모와의 면회를 불허하다가 당일 사람이 이상하니 보러오라고 하여 처음 면회를 하였을 때 원고는 이와 같이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원고는 유치장안에서도 자신의 오줌을 먹는등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어 경찰은 오히려 일부러 미친 척 한다 하여 구둣발로 차는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 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마. 이 사이 원고의 부모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문적 치료를 호소했으나, 위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송치후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을 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원고를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케 했으며,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원고는 그후 계속해서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증세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Diagnosis: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국제질병 분류기호 29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 분류 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이며 298.4는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여는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다"입니다)

사. 결국 피고는 고문을 행하고, 그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원고를 전혀 구호치 아니해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고문행위와 발병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향후에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임이 명백한 바, 이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금 10억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진단서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993.1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 돈 명	변호사 백 승 헌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우리는 지난 5·6공의 수많은 고문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 사건중에 몇몇 사건은 이미 법의 심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시기의 고문의 실상과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협편이며 심지어는 당시의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국진동지가 지난 86년 소위 '보임다산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고문후유증을 자신과 가족의 몸으로만 여겨 왔고, 사회와 정부에서 방치해왔음을 알았고, 이에 우리는 문국진 동지의 폐유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고문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10월 13일『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 다시 거론할 것도 없이 인류문명의 죄악이며, 가장 추악한 적이라고까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규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런 고문방지의 정신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무런 유보조건없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추악한 고문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의 김삼석 남매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도 공권력에 의한 고문은 남아 있으며, 문국진 동지와 같이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다수라는 사실 앞에서는 정부의 고문 근절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정권하에서 고문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였던 책임자들을 명확히 가려 처벌하는 일과 아울러 고문을 일삼았던 기관의 민주적인 개폐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난 시기에 고문을 당했던 이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만약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고문 문제는 단지 그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도 매우 크다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고문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하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구제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기의 고문문제라고 해서 단지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고문 문제를 엄격히 다름으로서 다시는 이땅에서 고문이 발생하지 않고,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5층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우] 120-142

'악령의 세월' 배상하라

고문당해 정신병 앓는 문국진씨 소송… 진상 규명·고통 분담 절실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 김근태씨 고문 사건을 일으킨 5·6공 '고문 정국' 실상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군사정권 아래서 수많은 지식인과 운동권 학생에게 자행된 밀실 수사와 고문 관행은, 그동안 이를 부인·은폐해온 당국과 정보 기관에 협박당한 피해자들의 항구로 정확한 피해 실상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서 말한 몇건을 제외하고는 고문 피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응징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오랫동안 고문후유증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고려대부속 구로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문국진씨(34)의 부인 윤연옥씨(30)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고문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가 그들이 겪어온 고통의 실상을 사회에 '공표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문씨 개인에 대한 피해 배상이라는 의미말고도, 5·6공 시절 수사 기관으로부터 고문당한 익명의 다수 피해자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무게가 실린다. 이 사건을 맡은 백승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 제기를 계기로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익명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역사적 평가와, 엄존하는 피해를 국민이 분담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한다.

3~6개월씩 일곱번 정신병원 입원

이돈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한 고소장에는 '고문 행위와 발병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원고는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 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했고, 노동 능력 상실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했다'면서 '앞으로 같은 이유로 적극적·소극적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모든 손해를



"고문 받는 인간은, 자기가 짐승으로 느껴진다."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고문피해 소송이 제기된 10월13일에는 서울 향린교회에서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식이 있었다. 고 박종철군 부친인 박정기

씨를 대표로 한 이 모임에는 문의환 계운재 김근태 송경용 최의팔 인재근 최정순 등 재야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문씨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

사건이 문씨 개인의 것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문의환 목사는 "우리가 강조하는 민족 민주 자주 통일의 가장 기본은 인권 수호에 있다.

나는 통일 운동을 제쳐놓고라도 고문 피해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부터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말했다. 85년 9월 민청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 역시

혹독한 고문을 당한 김근태씨는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뻗쳐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항거 불능 상태로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안 한마리 짐승이 되었다가 작은 미생물로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누가 고문의 실상을 물으면, 의식 저편에서부터 혐오감과 저항감이 솟구쳐 올라 많이 잊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 악몽을 멀쳐내지 않고는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잊고자 발버둥쳐 왔을 뿐이 다"라고 털어놓았다.

문국진씨는 86년 노동운동과 관련된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배중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때 3일 동안 고문당하며 조사를 받다가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30쪽 상자기사 참조).

그후 문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되어 88년 9월 윤연옥과 결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가을 임신 7개월인 아내 앞에서 병세가 재발했으며, 그뒤 거의 해마다 한번씩 재발해 지금까지 일곱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이다. 따라서 문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아내 윤씨에 따르면, 병이 재발할 때마다 문씨는 "누가 나를 미행한다, 집안에 도청 장치가 돼 있다, 안기부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심한 공포와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90년에는 "안기부에서 나와서 너를 강간하지 않았느냐, 나의 행동을 일일이 안기부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냐"라며 윤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주인집에서 방을 내달라고 하고, 어떤 엄마는 자기 아이가 문씨의 네살배기 딸 해인이와 놀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 고문 피해자 문국진씨(위)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모임 발족식(상자 사진).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잠자는 애를 껴안고 몰래 운 적도 많았다는 윤씨는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더이상 주저앉아 지켜보지 못할 것 같아 소송을 냈다”고 말한다. 윤씨는 또 ‘80년대 운동권’ 사람들에게 자행된 무자비한 투옥과 고문의 현장 속에서 한 인간이 이렇게 처절하게 파괴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인간성을 파괴한 잔혹한 고문과 고문의 두려움으로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미친 척한다며 방치한 살인적 행위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문씨가 입원하기 3일 전인 6월23일 아내 윤연옥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고문의 기억이 얼마나 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괴로움

들, 미발달한 우리의 운동, 나약한 육체, 이 사회가, 이 생존이 강제하는 하루하루의 어김 없는 삶의 굴레. 아! 우리의 생명,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 고문으로 숨 벅찬 순간 또는 전기가 생체를 관통하여 의식을 잃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구려. 당신은 아직도 이 둥 터오는 새벽의 시대에 암울 속에 갇혀 있는가요?’

현재 문씨가 입원해 있는 고려대부속 구로 병원 신경정신과 정인과 박사는 진단서에 문씨의 병이 ‘정신분열증’이라 적고,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86년 12월 첫 입원 당시 수사과 정 중 증상이 발생해 국립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한 것과 현재까지의 치료 경

과로 보아 심리적 고통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문씨를 치료해온 동교 신경정신과의원 배기영 박사는 소견서에서 문씨의 병이 국제질병 분류 기호 298.4에 해당되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질병 분류에 따르면, 분류기호 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고 한정되어 있고, ‘298.4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은 298.3에 망라된 급성 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어느 형태의 심인성 또는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정의된다’고 했다. 배박사는 또 80년 11월 덴마크의 학회에서 실시한 고문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백35명 중 75% 인 1백1명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고된 점과, 또한 고문후유증으로 불안·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 분열 증상이 있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문씨의 증세는 고문후유증,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대표 서준식)에서는 국제 인권 단체에 문국진씨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발송하고, 이 단체들과 연대하여 군사정권에 대한 고문후유증에 대해 협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최동씨.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

90년 8월7일 한양대에서 분신자살한 최동씨의 경우도 고문에 의한 인간 파괴의 참상 그 자체이다. 80년 성균관대 국문학과에 입학한 뒤 10여년 동안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을 해온 최씨는 89년 1월 ‘인천·부천 노동자회’ 사건으로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20여일 동안 잠을 거의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는 첫 솔대를 날카롭게 갈아 자해를 시도하여 기도가 1cm 이상 찢기는 상처를 입었으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다. 이때부터 그의 수면 기능이 파괴되고, 심한 우울증과 피해 망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

다. 구치소로 넘어간 후에도 여러 달 동안 방 치돼다가 종로신경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 증세로 구치소 밖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끝내 ‘구치소에서 가해진 음모로 폐인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포기하고 말았다.

85년 9월 민청련 사건으로 김근태씨와 함께 연행, 구속된 이을호씨(당시 서울대 철학과)도 고문의 악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다. 이씨는 9월2~25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과 잠 안제우기 등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던 중 정신 질환 증세를 보



아빠는 또 병원에 : 문국진씨 아내 윤연옥씨와 딸 혜인.

였다. 가족이 석방을 호소했으나 9월25일 서대문 구치소에 이감되었다. 그곳에서 인왕선 검사가 취조하는 도중 10월2일 심한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켜 15일 서대문 시립병원에 이송되었다. 이 기간에 가족이 이씨에 대한 병원의 비인간적 조처에 항의하여 11월23일 국립정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이송된 뒤 감정유치 명령에 의하여 정신분열 증세로 판명되었지만 석방이 보류되었다. 통상 2개월로 정해진 감정유치 명령을 9개월을 끌며 다섯차례 연장 한 끝에 86년 6월5일 석방되었다.

당시 함께 구속된 김근태씨는 자기가 받았던 고문을 이렇게 진술한다. “처음에는 물 고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칠성판에 꽁꽁 묶인 채 샤워 폭주와 주전자에서 물이 쏴아 하고 쏟아져 내려왔다. 물에 빠져 죽을 때의 고통과 공포 속에 처넣어진 것이다. 전기 고문을 할 때는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그러다가 점점 짚고 강하게, 중간에는 다시 약해지다가 갑자기 강한 전류를 보낸다. 뜨거운 불인두로

온몸을 지져 바짝 말라 바스라지게 하는 것이다. 핏줄을 뒤틀리게 하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디마다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국화꽃 피면 미친 악령이 되살아난다’

김씨와 같은 강도로 고문을 받았을 이씨는 석방후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완쾌되지 않았다. 86년 12월, 90년 10월, 91년 10월, 92년 9월, 이렇게 해마다 가을이면 어김 없이 행방불명되거나 안방에 놓인 국화 화분에 불을 지르는 등 고문의 악령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올해도 국화가 도심의 가을 정취를 풍요롭게 수놓기 시작하자, 아내 최정순씨는 최근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또 10월이다. 어머니와 나는 요즘 하루하루를 살얼음 디디듯 살아간다. 작년 이맘 때도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우리집은 지금 초긴장 상태이다. 발병 시기에는 잠을 안자고 이상한 행동을 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어머니와 나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약과 정성을 다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이전부터 3년을 내리 입원하는 소동을 치렀기 때문에 올해라도 건강하게 넘길다면 12월31일에 나는 만세를 부르려 한다.”

과거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저질러진 고문수사 관행의 전상을 규명하는 일은 문민 정부의 뜻이 되었다. 김근태씨 고문 사건과 관련하여 6공 재판부에서 조차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관에게 고문 사실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이 소송의 결과가 그리 비판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고 부정되는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수사 업무에 집착한 나머지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민 정부가 군사정권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고문 피해의 실상을 날낱이 조사하고, 이같은 암울 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

李成男 차장대우

문국진씨는 이렇게 정신질환자 됐다

• 86년 10월12일 : 3월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이른바 ‘보이다산’ 사건 관련자로 지목받아 수배 생활을 하던 중 청량리경찰서에 자수.

• 유치장에 구속된 후 3일 동안 최조실에서 잠을 안 재우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 3일후 부모와 첫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 부모가 사건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같이 고문하려고 사웠느냐”며 발작을 일으킴.

• 정신과 검진을 받게 해 달라는 부모의 애원이 묵살된 채 수사가 계속됨. 문씨는 구치소 안에서 자신의 오줌을 먹고, 모택동·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 전경들을 감시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구둣발로 강타함. 청량리경찰서 대공과 유치장에서 40일간 생활.

• 86년 11월22일 : 구속만기가 되자 검찰로 송치해 성동구치소 독방에 이감. 청찰을 부수고 자기가 눈 뜰을 복도에 쏟아버리는 등 계속 난동을 일으키자, 여러 사람이 있는 방으로 옮겼으나 계속 발작을 일으킴. 이어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10일간)으로 옮겨졌으나, 간수 1명이 군홧발로 계속 찼다 함. 그후 징역방에 끌려가 순발과 온몸이 꽁꽁 묶이고 얼굴에 검은 수건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4일 동안 쪼그리고 갇혀 있다가 다시 독방으로 보내짐. 부모가 면회갔을 때 문씨는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부모 앞에 성기를 내보이고 소리를 지름.

• 86년 12월12일 : 검찰 송치 20일후 부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 받고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케 함. 87년 2월28일까지 치료받은 후, 퇴원할 때 기소유예 처분 받음.

• 88년 9월 : 윤연옥과 결혼. 이후에도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부속 구로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중.

인권자료실		
등록일	수록번호	자료번호
		B/1-1 고문증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

1995. 5. 4. 판결선고	인
1995. 5. 4. 원본영수	

판결

사건 93가합76915 손해배상(기)

원고 문국진(文國鎮)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든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고 대한민국(大韓民國)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안우만

소송수행자 박찬홍, 김영창

변론종결 1995. 3.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77,887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0.

28.부터 1995. 5. 4.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단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9,071.5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천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5 내지 8, 11, 14, 16 내지 19, 21 내지 24, 27 내지
34, 37, 39, 을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기영, 김여옥의 각 증언 및 이 법원
의 연세대학교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속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
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는 1986. 3. 25. 원고가 소외 고성국 외 7인과 함께 1985. 경 다산기획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불온 서적 및 불온 유인물을 제작하여 노동자, 농민, 민민등을 의식화시켜 각 지역운동체세력을 연합하여 연합전선을 결성, 민중봉기에 의한 폭력혁명을 유발하여 독재정권과 제국주의를 타도, 민족민주혁명을 완수한 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획책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 책을 이롭게 하는 등 국가보안법 및 친화밀시위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여 위

다산기획 관련자 중 위 고성국 외 6인을 검거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백원담을 검거하지 못하여 그들을 수배조치하였는데, 원고는 수배된 이후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가 원고에 대한 검거책임을 맡은 경찰관들이 수시로 원고의 부모가 경영하던 옷가게에 찾아가 원고의 행방을 추궁하고 위 옷가게 앞을 지키고 있어 손님이 간소하는 등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모들이 고통을 반복 되자 같은 해 10. 27.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자수하여 위 경찰서에 연행되어 간 후 위 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장 소외 망 김낙연등은 원고를 상대로 위 다산기획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다산기획사건의 관련자로서 당시 견거되지 않고 있던 위 백원담의 행방에 관하여 추궁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행방을 모르겠다고 하자 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원고가 계속하여 답변을 거부하자 3일 동안 잡을 제대로 재우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였다.

(3) 원고는 위 자수일로부터 1986. 11. 3. 까지는 위 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다가 같은 달 4. 벌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집행되어 그 날로부터 같은 달 20. 까지는 위 경찰서 유치장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11. 까지는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부모들인 소외 문재호, 김여옥이 위 자수일로부터 3일후인 같은 해 10. 30. 위 경찰서로 원고를 변희가시 사가지고 간 통닭을 내어놓자 원고는 "나를 통닭 같이 고문하려 하느냐"하면서 문을 비비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등 발작증세를 보이

기 시작하여, 위 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하루 1, 2회 정도 름을 심하게
떨며 같이 수용되어 있던 소외 장이환이 원고에게 말을 걸면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답변
을 하고 보호실벽을 넘으려 하는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인 같은 해 12. 5. 위 문재호, 김여옥이 원고를 면회갔을 때 둘시 흥분된 상태로
웃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였으며, 담당검사로부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고
귀소한 후 19:00경 거실창가에 서서 갑자기 "재판장 이 새끼야 나오너라"하며 소리를
치는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취침시간 이후에도 잠을 자지않고 계속 서성거리며
시간마다 몇시나고 분는등 횡설수설하고, 같은 달 6. 9:20경 거실창문을 부수고 변소에
서 오물을 뿐내어 복도에 던지다가 위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정제주사를 맞고서야 진정
이 되었으며, 같은 달 7. 거실내에서 서성거리며 계속 구치소근무자를 불러 전후가 맞
지않는 질문을 하는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12:00경에는 식사를 하다가 밥을 창문밖으로
던지면서 "○○○ 나도하자"라는 구호를 3회 제창하였으며 16:00경에는 답답하다고 하
면서 출입문을 밭로 3회 차는등의 행동을 하고, 같은 달 8. 11:30경 밥을 창문밖으로 던
지며 "먹을 사람 먹어라"라고 소리치고 12:30경 거실문을 밭로 차서 자물쇠뭉치가 떨어
나가게 하고,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문을 밭로 차며 배식된 음식을 집어던지고 자다
입 횡설수설 중얼거리며 방안에서 서성거리는등의 행동을 하고 자신이 배
치용송 였으며 밤마다 큰 소리로 민주방송이라는 것을 하였다.

(4)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발작 및 정신이상증세를 보이자 동산병원 및 경희의료원에 데리고 갔던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 후 원고가 계속하여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치료 기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일부러 미친척한다고 하면서 원고를 유치장 독방에 수용하였으며, 원고가 검찰송치이후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 담당검사 및 위 구치소 담당공무원들은 위 구치소 의무과장 소외 이기린으로 하여금 1986. 12. 6. 부터 같은 달 8. 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원고를 진찰하도록 하여 위 이기린이 원고에게 진정제 주사를 놓아주고 같은 달 8. 최상선 신경정신과 원장인 소외 최상선으로 하여금 원고를 진찰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최상선이 원고의 증세를 구글상태에서 볼 수 있는 구글성장애로 판단하여 추후 관찰 및 정밀검사를 요한다 고 진단하고 위 문재호, 김여옥이 계속하여 원고의 치료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상증세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고 보송에 불어 놓았으며 약 4일간은 원고를 징벌방에 수용하기도 하였다.

(5) 그 후 검사의 감정유지청구에 따라 원고는 1986. 12. 12. 부터 1987. 2. 28. 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에 간접유치되어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같은 달 27. 이 병원 의사 소외 최용석은 원고의 증세를 정신분열병양(樣)장애로 진단하였고 같은 해 3. 4. 원고는 기

소유에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6) 원고는 그후 병세가 호전되어 출판사에 취직을 하고 1988. 9. 10. 소외 윤영옥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 29. 혼인신고를 마치었으며 1990. 2. 28. 딸을 출산하기도 하였으나 1993. 6. 경에 이로러 쉽게 흥분하며 화를 내고 딸을 때려죽이겠다고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기타 면접증적 사고, 이자극성, 과대망상, 피해망상, 수면장애, 총동조절장애, 인지기능장애, 통합적 사고력 감소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6. 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 경 되원하였으나 되원 후에도 계속 위와 같은 이상증세를 보여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 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1960. 3. 16. 생으로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 3.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였다가 3학년 2학기에 학교를 중퇴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산 기획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등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위 경찰서에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계에도 그러한 질병을 앓은 사람이 없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정신분열증은, 위 다산기획사건으로 수배되어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계에도 정신질환을 앓은 자가 없었는데 위와 같이 위 경찰서에서 3일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잡을 못자게 하

는 등의 일이 있고 난 후 비로소 발병된 것이라 할 것인데 나아가 그의 이같은 증상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계속 발작 및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사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징벌방에 가두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수사관계자등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87. 2. 28.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加害자를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93. 10. 14. 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된 후 출판사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여 딸까지 낳는 등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다가 1993. 6.에 이르러 갑자기 발작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

할 당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6년여가 경과하여 다시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날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위 발작증세가 새로이 나타난 1993. 6. 비로소 위 새로이 발생한 증상에 따른 손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해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총료당시인 1986. 12. 11.의 현가로 계산한 금 36,716,38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자

(나)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 서울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25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1993. 현재 월 금 530,000원(21,200 × 25), 1994. 현재 월 금 557,500원(22,300 × 25), 1995. 현재 월 금 680,450원(27,218 × 25), 원고는 30 내지 34세 사이의 남자 대졸자의 평균임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대학을 졸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가동기간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시인 1993. 10. 14.부터 60세가 되는 2020. 3. 16. 까지(경험칙)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정신분열증

가동능력 상실비율 :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20%, 재발기(1년에 2월)에는 100%

[증 거]

갑제3호증, 갑제4, 8 내지 10호증의 각 1, 2, 위 신체감정측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원미만, 마지막 월미만은 버린, 이하 같고, 중간의 월미만은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한다)

(가) 기 간

1) 1993. 10. 14.부터 1994. 1. 13. 까지 : 3개월

2) 그 다음날부터 1995. 1. 13. 까지 : 12개월

3)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20. 3. 13. 까지 : 302개월

(나) 현 가

$$1) 530,000원 \times (1 + 2/12 + 0.2 \times 10/12) \times (73.3702 - 71.1548) = 391,387$$

$$2) 557,500 \times (1 + 2/12 + 0.2 \times 10/12) \times (82.0328 - 73.3702) = 1,609,799$$

$$3) 680,450 \times (1 + 2/12 + 0.2 \times 10/12) \times (235.0868 - 82.0328) = 34,715,198$$

4) 합계 금 36,716,384원

나.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치료내용 : 향후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정신분열증의 만성화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외래에서의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재발기(1년에 2월)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함

(나) 치료기간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1995. 3. 17.부터 원고의 여명기간인 2030. 7. 11.까지(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다) 치료비 :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월 금 376,854원($9,044,500 \div 24$), 재발기(1년에 2월)에는 월 금 1,000,000원이 소요되어 매월 금 480,711원($(376,854 \times 10 + 1,000,000) \div 24$)

$0,000 \times 2) \times 12$ }의 치료비가 소요됨

[증거]

위 신체감정측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기간

1995. 3. 17.부터 2030. 6. 16.까지 : 423개월

(나) 한 가(원고가 구하는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
법에 따른다)

$$480,711 \times (277.2461 - 83.4467) = 93,161,503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장애발생의 경위,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금 10,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77,887원(일실수입 금 36,716,384원 + 향후치료
비 금 93,161,503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 이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10.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5. 5.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시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4.

재판장 판사 성분용 _____

판사 박은영 _____

판사 최혜리 _____

2월

2월 사전 계획

“고문 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계획서

1. 준비경과

5월 대표회의에서 연세대 안에서의 홍보와 모금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

4월 말-5월 중순: 그간의 접촉 과정으로 총학생회와 함께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총여학생회에 구두로 협조 요청, 세 번에 걸친 만남 끝에 총여의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온 후에 할 수 있고, 내부의 논의가 되었음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음.

5월 20일- 총여학생회를 비롯하여 문국진, 김복영씨와 관련된 조직들에 제안문을 발송하였음.

5월 24일- 총여학생회실에서 오후 6시 30분에 모임, 총여, 정외과, 자유교양, 문과대 학생회 등이 모여서 1차 준비모임, 행사의 취지를 확인하고 1차로 준비모임을 더 갖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로 함.

5월 30일- 오후 6시에 총여학생회실에서 모임, 총여, 정외과, 자유교양, KUSA 등
• 이 참석하고, 문과대와 사회과학대, 대학원학생회는 위임을 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잡음. 연세춘추에 기사 나감.

2. 준비 역할 분담

① 1인 1천원 내기 운동- 각 단대별로 진행을 시키고, 학생회관 앞에 모금함과 가판대 설치(총여)

② 주점- 정외과 학생회(인원 약 30명), 준비주체와 6월 2일 만난 후 구체적인 것을 확정

③ 총여학생회- 현수막, 대형깃발, 대형 현수막 제작, 엽서 제작, 국화꽃 판매 팀 교섭, 장소 교섭, 가판대 운용(학생회관 앞)

④ KUSA, 자유교양- (유인물) 포스터, 쪽글씨, 사진전 등 홍보에 주력

3. 준비 일정

① 6월 2일까지 홍보 기본 자료 인계, 계획 확정, 현수막 제작과 게시

② 6월 7일 홍보물 인쇄 완료, 각 단대별로 배포, 각 언론사와 연세 방송국에 보도의뢰서 발송

③ 6월 7일 주점 장보기 완료

④ 6월 8일 아침 8시 교문 앞 선전전

⑤ 6월 8일 정오부터 주점 시작

⑥ 6월 8일 오후 7시-모임, 회원 만남의 자리

⑦ 6월 8일 오후 6시-단대, 모금과 서명 취합

4. 홍보계획

① 자료집(1천원 판매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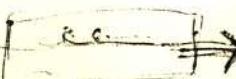
- 제목: 고문은 계속되고 있다-고문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 내용: 행사 취지문

문국진과 김복영에 대한 프로필

문국진과 김복영 사건 개요

- 6. 7 : (1주간 4회)

(주간) - 6. 7 ~ 6. 13 주간 주제



일기, 신문 자료 등
고문 관련 자료

· 분량: 50쪽 안

② 엽서- 1,000장(자료집과 함께 판매)

정화대 앞으로 하여 국회청원 취지와 동일하게

③ 유인물- 10,000장 A4 흑백 양면

④ 서명용지- 1,000장

⑤ 깃발: 높이 6M*가로 3.5M*세로 2M- 학생회관 앞 설치

⑥ 대형 현수막

⑦ 쪽글씨를 교문 앞에서부터 학교 곳곳에 설치

5. 주점 계획

① 장소: 학생회관 앞(우천시 푸른샘)

② 차림새는 별도 확정

③ 정외과와 주점 전문요원 투입

④ 자리와 천막은 정외과가 담당

⑤ 6월7일과 8일 이틀동안 사용 가능한 차량 조달 필요

연세대 1994.7.6
연세대 1994.7.6

“고문 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행사 기획안(가안)

1. 행사 취지

- ① 연세대 구성원들의 참여로 연세대 동문의 고통에 동참하는 계기로 만든다. (모금, 서명, 엽서 쓰기 등)
- ② 고문의 심각성에 대해 새롭게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든다.
- ③ 문국진, 김복영의 경우를 통해서 고문피해자의 고통을 알린다.
- ④ 연세대 안에서 인권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다.

2. 행사 기조

- ①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층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문국진, 김복영씨와 관련된 학내 조직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들을 행사의 주체로 세운다.
- ③ 두 피해자와 고문에 대한 홍보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도록 한다.
- ④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도록 한다.

3. 일시: 1994년 6월 8일(수)

4. 장소: 연세대 학생회관 주변

5. 행사 내용

- (1) 1인 1전원 내기 운동- 학부생을 대상으로 고문 피해 동문인 두 선배의 치료를 위한 모금을 전개한다. 학교에서 목이 좋은 곳 4군데 정도를 선정하여 하루 동안 모금을 하고, 각 과별, 각 단대별 모금도 별도로 진행하며, 교수와 교직원을 상대로 한 모금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사업은 홍보와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진행한다.
- (2) 주점- 학생회관 앞 주변을 활용하여 점심시간 때부터 저녁 8시경까지 주점을 운영한다. 음식은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학생과 외부인사가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한다. 외부인사의 조직, 동원은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 맡는다.
- (3) 문화행사- 고문 관련 사진전을 백양로 주변에 설치하여 전시한다. 모금이나 주점조는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창조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4) 서명- 6월 8일을 전후하여 백양로 등지에서 국회와 청와대 등에 유엔고문방지협약과 고문 피해자 대책을 촉구하는 연세인 서명을 전개하여 관계기관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 (5) 홍보- 백양로를 중심으로 고문에 관한 대자보 사업, 신문광고등을 조직하고, 학내외 언론사에 적극적인 보도를 의뢰한다. 또, 행사 포스터, 리플렛과 자료집을 준비한다.
- (6) 엽서 쓰기- 문국진, 김복영씨(또는 그 가족)에게 격려엽서 쓰기와 청와대에 탄원하는 내용

용의 엽서쓰기를 백양로 등지에서 진행한다. 이날 받은 엽서는 모아서 일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6. 준비일정

5월 20일- 논의 완료

5월 25일까지- 교섭 완료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학내 행사 홍보 기간, 학내외 언론사 보도의뢰서 발송

6월 7일- 총점검, 주점 준비 완료

6월 8일- 행사

7. 주체 꾸리기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연세 민주동문회

연세대 총학생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문과대 학생회

사회과학대 학생회

정외과 학생회

자유교양

KUSA

대학원 총학생회

연세춘추

재연 용산고 동문회

재연 수원고 동문회

복학생협의회

8. 준비사항

ㄱ. 모금조

ㄴ. 주점조

ㄷ. 홍보조

ㄹ. 서명조

ㅁ. 기타

16

김영삼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5공 시절의 고문으로 인해 고문후유증을 앓고 있는 문국진씨를 후원하고 그를 통한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우리는 고문의 악령이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과거 고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벌인 일련의 개혁조치를 매우 큰 기대를 갖고 대하였으며, 과거 인권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한 척결을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 4개월로 접어든 오늘, 그리고 6.29 7주년을 코 앞에 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너무도 헛된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통령께 탄원을 하는 것은 인류세계가 문명의 적으로 규정한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으며, 과거 고문을 당한 이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김삼석 남매 사건'과 올해의 '희망새 사건' 등에서 연행된 이들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을 호소하였습니다. 또, 그런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고문 행위에 대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자백했을지도 모를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국진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그들은 자신과 가족만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과거 청산 없이는 밝은 미래도 없다는 점을 우리의 현대사를 통해 너무도 절실히 깨달아왔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국가, 도덕성을 기초로 하는 국가에서 인권비리에 대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우리의 미래마저 우울하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 저질 러진 고문에 대해서 피해자에게는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을, 고문 가해자에게는 처

벌을 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고문의 악령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1. 고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된 고문 사실에 대해서 정부는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고문 피해자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고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고문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의 고문은 대부분의 경우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치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여 주제를 바꾸고자,

3.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고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4.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과거 자행된 고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고문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특가법상의 고문죄를 인정하는 수준으로는 고문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고문의 근절과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고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5.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고 이를 유보없이 비준하여 고문의 근절과 고문 헌금증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과거 6공 시절부터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작년 유엔인권대회에서 연내(93년) 가입을 천명하였으나, 그후 수 차례에 걸쳐서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올해도 한승주 외무장관은 지난 4월 8일의 '유엔 50주년 기념위원회' 발족 때 오는 임시국회에서 비준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런 위약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아무런 유보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과거에 자행된 고문과 인권비리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고문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문이 완전히 근절되는 때까지 꾸준히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아울러 본 탄원에 대해 대통령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에서도 과거 자행된 고문에 대해 또 그문제에 대해 짚어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8일

서울시 8番고 학자로2길 404번지 | 기업비디 F01호 | 전화: 796-8261

1. 그문 피해자에 대한 고찰의 기본 사항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2. 그문 피해자에 대한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3. 그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합니다.
 4. 그문의 근절과 그문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장을 위한 축출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합니다.

대표 박정기 드림.

연세인이 드리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대책 촉구 탄원

우리는 지난 6월 8일 연세대학교 신촌교정에서 “고문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행사를 갖고 고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번 행사는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연세민주동문회가 제안하였고, 이에 학교에 있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결합하여 행사를 가졌습니다. 고문을 알리는 사진전에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모금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청와대로 이미 그날 행사에서 받은 엽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고문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유에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에 대해서 피해자에게는 치료와 보상을 하여야 하며, 고문 가해자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으며, 과거의 인권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금 조성되는 공안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다시 고문이 자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땅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그 고문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당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역사적인 죄악입니다.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도 과거 자행된 고문에 대해 또, 고문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서명에 참가한 연세인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고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고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3.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4.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5.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고 이를 유보없이 비준하여 고문의 근절과 고문 후유증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한우정

연세대학교 2013학번 3년 외 1,171인 일동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총무 박래군

발신일: 1994년 6월 28일

제목: 고문 피해 가족과 연세대학생 서명 접수에 관한 보도협조 의뢰의 건

1.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와 귀하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2.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고 박종철열사 부친)은 오늘(6월 28일) 오후 2시에 김 영삼 대통령 앞으로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접수시킨 탄원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된 고문 사실에 대해서 정부는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고문 피해자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고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고문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의 고문은 대부분의 경우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치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3.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고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4.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과거 자행된 고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고문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특가법상의 고문죄를 인정하는 수준으로는 고문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고문의 근절과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고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5.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고 이를 유보없이 비준하여 고문의 근절과 고문 후유증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과거 6공 시절부터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작년 유엔인권대회에서 연내(93년) 가입을 천명하였으나, 그후 수 차례에 걸쳐

서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올해도 한승주 외무장관은 지난 4월 8일의 '유엔 50주년 기념위원회' 발족 때 오는 임시국회에서 비준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런 위약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아무런 유보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문국진, 김복영, 방양균, 강환웅, 김종경씨의 가족이 탄원서를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시켰습니다.

3. 또한, 연세대 한우정(연세대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3년)외 1,171인은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연세인 1차 서명"을 받아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시켰습니다.

4.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은 이후 고문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1차 모임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1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갖는다). 또한, "고문백서" 발간 작업을 1년동안 전문가들의 연구로 진행할 것이며,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과 "고문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5. 탄원서 접수시킨 고문피해자에 관한 약간의 소개

(1) 문국진- 연세대 철학과 79, 보임 다산 사건으로 86년 수배중 자수, 청량리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임, 이후 정신분열증으로 6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했음.

(2) 김복영- 연세대 정외과 84, 86년 4.19 시위로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됨. 경찰 조사과정과 구치소 생활 중에 고문을 당함. 석방 이후 8차례에 걸쳐서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음.

(3) 강환웅- 86년 중앙대 법대 입학. 86년 11월 13일 신길동 시위로 구속 당하면서 쇠파이프, 각목으로 구타를 당함. 노량진경찰서와 영등포구치소에서 구타와 함께 형사가 자신의 구두 밑창을 훑어 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함. 89년 5월부터 구문후유증으로 3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환경과 과대망상이 심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4) 김종경- 시민. 93년 7월, 서대문경찰서에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불법 연행되어 범행사실의 자백을 강요하며, 수갑을 채운 채 손목을 비틀고 뒷목을 구타함. 그후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하였고, 선풍기 가제도구 등의 사물을 보고 형사인 냥 얘기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음.

(5) 방양균- 전 서경원 의원 보좌관.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으로 89년 6월 구속되어 현재까지 수감중. 그는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는데 군복으로 갈아입힌 후 구타와, 13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재운 채 철야심문을 하였고 총구를 이마에 대고 죽인다고 하는 등 정신적인 고문을 당함. 그는 노이로제 증상처럼 목을 꽉 누르고 숨을 못 쉬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는 협심증과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당하고 있음.

5. 모임에서 접수한 탄원서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탄원서는 별첨과 같다.

6. 이상의 내용을 보도해 주십시오.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심 재판 판결문 전문>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부

판 결

사 건 93가합76915 손해배상(기)

원 고 문 국 진 (文 國 鎮)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 고 대한민국(大韓民國)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안 우 만

소송수행자 박찬홍, 김영창

변론 종결 1995.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77,887원 및 이에 대하여 1993.10.28부터 1995.5.4.까지
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9,071,5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5 내지 8, 11, 14, 16 내지 19, 21 내지 24, 27 내지 34, 37, 39, 을제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기영, 김여옥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부속 신촌세브
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반증 없다.

(1)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는 1986.3.25. 원고가 소외 고성국 외 7인과 함께 1985.경 다산기획
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불온서적 및 불온 유인물을 제작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을 의식화시켜
각 지역운동세력을 연합하여 연합전선을 결성, 민중봉기에 의한 폭력혁명을 유발하여 독재정권과
제국주의를 타도, 민족민주혁명을 완수한 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획책하여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에 동조, 적을 이롭게 하는 등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여 위 다산기획 관련자 중 위 고성국외 6인을 검거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백원담을 검거하지 못하여 그들을 수배조치하였는데, 원고는 수배된 이후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가 원고에 대한 검거책임을 맡은 경찰관들이 수시로 원고의 부모가 경영하던 옷가게에 찾아가 원고의 행방을 추궁하고 위 옷가게 앞을 지키고 있어 손님이 감소하는 등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모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0.27.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자수하여 위 경찰서에 연행되어 간 후 위 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장 소외 김낙현등은 원고를 상대로 위 다산기획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다산기획사건의 관련자로서 당시 검거되지 않고 있던 위 백원담의 행방에 관하여 추궁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행방을 모른다고 하자 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원고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자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였다.

(3) 원고는 위 자수일로부터 1986.11.3까지는 위 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다가 같은 달 4.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집행되어 그날로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위 경찰서 유치장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11까지는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부모들인 소외 문재호, 김여옥이 위 자수일로부터 3일후인 같은 해 10.30. 위 경찰서로 원고를 면회가서 사가지고 간 통닭을 내어놓자 원고는 원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하려 하느냐”하면서 몸을 비비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등 발작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위 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하루 1, 2회 정도 몸을 심하게 떨며 수용되어 있던 소외 장이환이 원고에게 말을 걸면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답변을 하고 보호실벽을 넘으려 하는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인 같은 해 12.5. 위 문재호, 김여옥이 원고를 면회하려 갔을 때 몹시 홍분된 상태로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였으며, 담당검사로부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고 귀소한 후 19:00경 거실창가에 서서 갑자기 “재판장 이 새끼야 나오너라”하며 소리를 치는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취침시간 이후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서성거리며 시간마다 몇시냐고 묻는등 횡설수설하고, 같은 달 6. 9:20경 거실창문을 부수고 변소에서 오물을 펴내어 복도에 던지다가 위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정제 주사를 맞고서야 진정이 되었으며, 같은 달 7. 거실내에서 서성거리며 계속 구치소 근무자를 불러 전후가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12:00경에는 식사를 하다가 밥을 창문 밖으로 던지면서 “○○○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3회 제창하였으며 16:00경에는 답답하다고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3회 차는 등의 행동을 하고, 같은 달 8. 11:30경 밥을 창밖으로 던지며 “먹을 사람 먹으라”라고 소리치고 12:30경 거실문을 발로 차서 자물쇠뭉치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후에도 간헐적으로 문을 차며 배식된 음식을 집어던지고 자다가 자주 일어나 횡설수설 중얼거리며 방안에서 서성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자신이 배설한 변을 먹기도 하였으며 밤마다 큰 소리로 민주방송이라는 것을 하였다.

(4)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들은 원고가 위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발작 및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자 동산병원 및 경희의료원에 데리고 갔던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후 원고가 계속하여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치료 기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일부러 미친 척한다고 하면서 원고를 유치장 독방에 수용하였으며, 원고가 검찰 송치 이후 위 구치소 담당공무원들은 위 구치소 의무과장 소외 이기린으로 하여금 1986.12.6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원고를 진찰하도록 하여 위 이기린이 원고에게 진정제 주사를 놓아주고 같은 달 8. 최상섭 신경정신과 원장인 소외 최상섭으로 하여금 원고를 진찰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최상섭이 원고의 증세를 구금상태에서 볼 수 있는 구금성장으로 판단하여 추후 진찰 및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진단하고 위 문재호, 김여옥이 계속하여 원고의 치료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상증세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고 포승에 묶어 놓았으며 약 4일간은 원고를 징벌방에 수용하기도 하였다.

(5) 그후 검사의 감정유치청구에 따라 원고는 1986.12.12.부터 1987.2.28.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같은 달 27. 위 병원 의사 소외 최용성은 원고의 증세를 정

신분열병양(様)장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해 3.4.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6) 원고는 그후 병세가 호전되어 출판사에 취직을 하고 1988.9.10. 소외 윤연옥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29.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1990.2.28. 딸을 출산하기도 하였으나 1993.6.경에 이르러 쉽게 홍분하며 화를 내고 딸을 때려죽이겠다고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기타 편집증적 사고, 이자극성, 과대망상, 피해망상, 수면장애,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장애, 통합적 사고력 감소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6.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경 퇴원하였으나 퇴원후에도 계속 위와 같은 이상증세를 보여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1960.3.16. 생으로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3.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였다가 3학년 2학기에 학교를 중퇴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산기획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등 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위 경찰서에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계에도 그러한 질병을 앓은 사람이 없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정신분열증은, 위 다산기획사건으로 수배되어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계에도 정신질환을 앓은 자가 없었는데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3일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일이 있고 난 후 비로소 발병된 것이라 할 것인데 나아가 그의 이같은 증상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계속 발작 및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사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징벌방에 가두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수사관계자등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87.2.28.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93.10.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된 후 출판사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여 딸까지 낳는 등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다가 1993.6.에 이르러 갑자기 발작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 할 당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6년여가 경과하여 다시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날 것을 예견 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위 발작증세가 새로이 나타난 1993.6. 비로소 위 새로이 발생한 증상에 따른 손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해 10.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당시인 1986.12.11.의 현가로 계산한 금 36,716,38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내용

(가) 성별: 남자

(나) 주거생활권: 도시지역인 서울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월 25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 상당 (1993. 현재 월 금 530,000원($21,200 \times 25$), 1994. 현재 월 금 557,500원($22,300 \times 25$), 1995. 현재 월 금 680,450원($27,218 \times 25$), 원고는 30 내지 34세 사이의 남자 대졸자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대학을 졸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시인 1993.10.14.부터 60세가 되는 2020.3.16.까지(경험칙)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정신분열증

가동능력 상실비율: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20%, 재발기(1년에 2월)에는 100%

[증거]

갑제3호증, 갑제4, 8 내지 10호증의 각 1, 2,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원미만,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고, 중간의 월미만은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삽입한다)

(가) 기간

1) 1993.10.14.부터 1994.1.13까지: 3개월

2) 그 다음날부터 1995.1.13.까지: 12개월

3)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20.3.13.까지: 302개월

(나) 현가

1) $530,000\text{원} \times (1 \times 2/12 + 0.2 \times 10/12) \times (73.3702 - 71.1548) = 391,387$

2) $557,500 \times (1 \times 2/12 + 0.2 \times 10/12) \times (82.0328 - 73.3702) = 1,609,799$

3) $680,450 \times (1 \times 2/12 + 0.2 \times 10/12) \times (235.0868 - 82.0328) = 34,715,198$

4) 합계 금 36,716,384원

나.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치료내용: 향후 혼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정신분열증의 만성화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외래에서의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재발기(1년에 2월)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함.

(나) 치료기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1995.3.17.부터 원고의 여명기간인 2030.7.11.까지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다) 치료비: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월 금 376,854원($9,044,500 \div 24$), 재발기(1년에 2월)에는 월 금 1,000,000원이 소요되어 매월 금 480,711원($376,854 \times 10 + 1,000,000 \times 2 \div 12$)의 치료비가 소요됨.

[증거]

위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기간

1995.3.17.부터 2030.6.16.까지: 423개월

(나) 현가(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480,711 \times (277.2461 - 83.4467) = 93,161,503\text{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이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장애발생의 경위,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금 10,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77,887원(일실수입) 금 36,716,384원+향후치료비 금 93,161,503×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0.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5.5.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탁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에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5.4.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박은영

판사 최혜리

한겨레신문(HAN) 93/12/09

제 목: [국민기자석] 문국진 고문피해 진상 아는 분 연락을.

5, 6공 군사정권 당시 극악한 고문수사로 인해 정신병(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에 걸린 문국진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요구와 구속·수배·고문수사의 척결을 위해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국가에 맞서 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배를 받았던 문씨는 86년에 자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문수사를 자행해 문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이후 해마다 정신병이 발병해 지금도 고대부속 구로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중이다.

경찰쪽은 제출한 답변서에서 86년 당시 고문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구로병원 신경정신과쪽은 소견서에서 "문씨의 발병은 1986년 12월 첫 입원 당시 수사과정 중 증상이 발생하여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한 것과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로 보아, 심한 비인도 적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법정 투쟁의 증거 확보를 위해 86년 10월 문씨와 함께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람을 찾고 있다. 꼭 연락이 있기를 바란다.

박효근/서울 중랑구 면목6동 315

의권 자료실		
		B11-1 고문후유증

현대판 마루타, 나는 늘 감시 속에 인체실험을 당한다?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장)

외계인이나 컴퓨터 인간이 인간의 뇌마저 지배하는 영화나, 만화는 많다. 사람의 생각마저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세계는 무척이나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선 지배자는 인간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무조건 복종하게 할 것이다. 여하한 거부나 반항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피지배자는 인간일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일은 있어서도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다. 인간이 오랜 세월을 통해 이룬 진보의 결과가 지배자 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과 사고능력마저 저당잡히는 노예조차조 못한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다.

하지만, 20세기 말이라는 요즘의 세상에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마저 지배당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대사는 어두웠다. 미행과 감시, 체포, 감옥, 고문, 정보기관을 연상하는 지난 시기의 상처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남아 있을까?

부도덕한 권력은 늘 억압 도구를 강화하고, 그 억압을 통한 지배는 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80년 당시 광주를 살았던 한 사람의 전사의 예에서 당시의 고통이 어떻게 남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광주항쟁의 피해자-K씨의 경우

당시 32세로 YWCA 신용조합에 근무하던 K씨는 5월 18일 공수부대원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시위군중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튿날인 5월 19일 자기 사무실 옆에서 청년들이 공수부대원들에게 군화발로 짓밟히고 무차별 난타당하여 죽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계엄군의 만행을 본 그는 그날 저녁 <들불야학>팀과 의논하여 공수부대의 잔학상과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투쟁소식을 알리기 위해 대자보와 『투사회보』를 제작하는 등 이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였다. 5월 25일, 사태가 긴박해지자 <시민학생수습위원회>가 결성되는데 여기서 그는 기획실장으로 여러 일을 담당하였다.

5월 27일 새벽, 도청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끝까지 남아 있던 그는 옆에서 동료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끝까지 저항하다 불잡혔다. 갖은 폭행과 고문을 당한 후 그는 간첩, 내란죄 등으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젊은 시절부터 소외받은 기층민중과 아픔을 함께 했고 이들의 지위를 높이는데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은 너무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더구나 의동생과 많은 동료들의 사망소식을 접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자책으로 화장실 콘크리트벽에 머리를 부딪는 등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여러 번의 자살실패와 더불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수한 고문뿐이었고, 고문을 받는 동안 여러 번 정신을 잃기도 했다. 그 이후 그는 감방에서 심한 환시와 환청 증세를 보이고 죽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나 종교에 관한 망상을 나타냈다. 1981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석방된 그는 대낮에 하늘을 보고 “하느님 용서해주세요”라고 울부짖는가 하면 심지어는 알몸으로 길가를 달려가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후 경련발작이 나타나서 1982년 11월 뇌수중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두통이 계속되어 정신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금도 정신운동의 흥분을 보이고 파괴적 행동을 하며 자기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 눈만 감으면 광주 5월 민주항쟁 때의 모습이 떠올라 불안해하고, 무서운 환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렵게 잠이 들었다 해도 악

동에 시달린다. 자동차의 경적소리를 듣거나 심지어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하고 놀란다.

처음 K씨에 대한 정신과의 진단은 스트레스 장애로 내려졌으나 그후 외상성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간질 및 뇌수종에 의한 기질적 정신장애, 기질성 정신병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의 증상은 인간이 단계적으로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뇌손상에 의한 기질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간질성 발작과 인지기능의 장애이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불안, 우울 및 피해의식으로 인한 환시, 환청 등을 보이며 사고기능이 와해되어 있고 사고 자체가 지리멸렬되어 있다. 파출소에 찾아가 자기 때문에 후배들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자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상당히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증상은 5월이 되면 더욱 심해져서 지금도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또, 고문을 당한 바 있는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기고 있다.

92.1.27.

이제까지 내가 바보처럼 행동했던 것 같다. 아직까지도 그 지독한 감시와 지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마치 그런 것이 언제 있었느냐는 아무 걱정없이 행동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소리를 어젯밤에는 매우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매일 밤마다 이상한 꿈을꾼다.

그것이 마치 누군가가 지배하고 조종하기라도 하는 양 마치 어떤 계기성을 띠고 복잡한 내용을 이루며 마치 완결된 하나의 소설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시었다.

몇 달전의 그때처럼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찾아올려는 것인지 난 모르겠다.

그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큰 문제성이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면 하고 얼마나 바래왔던가. 그러나 지금에 와서야 그 악몽이 되살아나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위 글은 연세대 출신인 한 학생의 일기다. 그는 매우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열심히 싸웠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 단골로 연행되는 불운한 사람이었다. 결국 86년 4.19 시위 때 경찰에 연행되었고, 연행 과정에서부터 무수한 구타를 당해야 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그는 그런대로 잘 지냈다. 하지만, 그가 출소하고 나서 곧 그에게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거나 어디를 나가면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런 공포심이 그를 무척이나 위축시켰다. 그는 집 밖으 나서길 꺼려했다. 집에서 조차 필담으로 얘기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 그런 그는 결국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서 정신병원을 1년에 두차례 꼴로 드나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카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는 자살마저도 결해하였다가 가족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도 하였다. 그런 그는 2월 초 집에 아무런 말도 업이 집을 나가고 말았다.

이런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많다. 문국진씨를 비롯하여 강환웅, 최영미씨등등 이루 헤알리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안기부, 경찰, 보안사에 연행되어 무지스런 고문을 당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려서 고생한다.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람이 고통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앓고 있는 이들이 있다. 분명히 그들은 고문을 당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요즘도 인권단체들에는 자신이 늘 실험대상이 되어 고통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천주교정의구전국사제단 같은 곳엔느 100건도 넘는 사건을 접수해놓고 있다.

입안이 이유없이 통통붓고 난시간 전에 분명히 잤는데 계속 졸리고 피곤하고 단어는 영 기억이 되지 않고 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놈들의 괴롭힘의 촛점을 영어 습득의 방해에 맞춰져 있는 것을 향시 느낍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런식의 괴롭힘은 내 고민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금방 없어지곤 했는데 이곳은 필리핀이니 그럴 사람은 없고 필리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 가지고 그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12월 15일에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일요일인 인라 박세직 지사님이 교회에서 연설하신다기에 갈려고 하다가 배가 아파서 방안에서 혼자 뒹굴었습니다. 놈들이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놈들과 생각을 주고 받을 때마다 고통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던 것을 당신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생략)

내가 생각을 읽는 놈들의 스케일을 알기까지는 4년동안의 지옥같은 고통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매순간마다 당신이나 남들에게 믿어줄 것을 호소하기보다는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믿기 힘들 것인가를 알기에 인내하며 떨리기다려 왔습니다.

제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믿으시겠는지요. 그것도 컴퓨터에 연결된(전파로) 핸드터미널을 갖고 다니며 24시간 1초도 쉬질 않고 계속 지껄여대며 저와 온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체면까지 걸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간 로보트를 만들어 원격조종을 하는 안전기호기부의 하수인이 상상도 못할 잔인성, 비인간성은 공상소설 속에서나 나올까말까 한 악귀 그대로입니다.

제 집사람은 83년도 12우려 8일 대낮 12시경 저의 집 뒤에다가 차를 대기시켰다가 받아별 기고 여동생마저 정보부에 다닌다는 최판감이와 위장결혼까지 당하였고 저는 현재까지 만 11년간 실험실의 몰모트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생체실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하여 한국판 마루타랍니다.(생략)

고도의 교육을 요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파살인을 감히 밝히려 하겠느냐 계산이겠죠. 전파공학 생체공학(분자생리학) 음향생리학등 최첨단 분야를 이용한 국가권력이 하는 생체실험이니까요. 간첩 고문할 때 한다는 잠 못 자게 하는 수법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2-3시 사이에 전기고문과 함께 신호압축방법(인간의 청각 감지현상과 음향심리학을 이용함)까지 동원한 고문하는가 하면 부부생활마저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리를 폰이라는 단어로 표시합니다. 보통 이야기 소리가 40-50폰입니다. 밤중에 40폰 이상이면 잠을 못자고 60폰 이상이면 안절부절 못하고 80폰 이상이면 쇠욕이 없어지면 두통이 생기고 위장병과 심장병이 생긴다는 임상실험입니다. 전기톱으로 쇠잘는 소리, 알미늄 샷슈 여닫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 자동차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를 80폰으로 밤새 녹음을 해서 틀어줍니다. 이토록 잔인한 전파살인을 하수인을 시켜서 계속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명한 하극상 12.12사태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을 군인은 나라지키는게 최대 요 에 국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는게 첫번째 이유가 아닌 둘째 이유요 첫째는 호남고립, 반김대중 정책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편지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 실무자들과 만나기도 한다.

도 피해자 자신의 생활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살피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찾는 행위이다.

현대인의 병리현상

1980년대 후반 미국 고문학자 존 헤이스팅스는

80년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1980년대 미국 고문학자 존 헤이스팅스는 80년대가 남긴 상처들

-고문후유증

-정신적인 고통-미행, 감시, 고문, 억압 속에서

-그런데 실제로 고문, 미행, 억압을 당하지 않고도 피해망상증을 보인다고 할 때

말이 되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적 원인이 기질적인 원인이 우러난 경우를 학제적 원인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더 자세하게 인간에 영향을 미친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실제 그들이 겪는 고통은 무엇인가?

이들의 양태는 어떤가?

그리고 이들의 치료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들이 경험한 것처럼 전화와 출입문, 이동, 운동경험

장애 현상이 있다.

이들의 증상은

인권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한번 이상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매우 심각하게 얘기한다. 하지만, 듣다보면 곧 인권단체의 실무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 암담해진다. 그토록 집요한 이들, 또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듯하면 여지없이 당해보지 않았기 뻬ㄴ 에모른다는 그들,

나도 여러 사람을 그들을 겪어보았다.

그들은 단지 운동경험을 가진 수감중 교도관들을 호소하는 고초상과 함께

사례 1-외국까지 쫓아간 전자파

전자파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대부분의 곳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파는 전부로 어떤

사례 2-모래를 뿌린다는 사람

모래를 깔는 여러 사람들은 부터 가래를 뱉는 것과, 자각증리를

이외의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자파 피해로 인한 의혹이지 않은

사례 3-누군가 계속 떠들어 댄다

누군가를 추며, 저도 저도 주었지만, 이미 빨아들여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례 4-집단적인 탄원을 했다는 것

여름에 수영을 하거나, 경식하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있으며 생명을 유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두 망설여집니다. 우리는

우리는 20세기 말에 살고 있다.

20세기 말의 한국 상황에서 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 집단적인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인권단체를 찾아오는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 피해자들의 호소

온갖 이란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것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전자파, 괴성, 압박점, 그리고 빛 등에 의해서 고통받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그들은 안기부라든가, 강력한 권력집단에 의해 늘 감시당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마저도 조정당하고 지배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전에 미국에서는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어주기까지 한 일이 있어 이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기관이 인정하고 보상해 준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정말 인간은 문명에 의해 불행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도대체가 자신의 생각마저 노출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대체로 세가지 분류로 나뉜다.

첫째는 실제로 고통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즉, 고문이나 고통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중에도 직접적인 육체적인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T)를 보이는 경우다.

그러나, 직접적인 고문보다는 극도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의학적인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뒤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기질적인 원인이 우선인지 사회문화적인 요인인 우선인지 이 두 요인 중 어떤 것이 더 강렬하게 인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는 누구도 분명히 하지 못하고 학설이 분분한 상태다.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을 겪은 광주시민들이 경험한 것처럼 집단적 충격에 의한 정신적인

장애 현상이 있다.

이들의 증상은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즉,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킨다.

1. 어떤 물질에 의해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파라는가, 약은 정신분열증 초기 환자-교도소 수감중 교도관들을 고소하는 고소장과 함께

존경하옵는 검찰총장님,

저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괴로운 일로 탄원하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어디 이건 제가 있는 곳에서 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가래침 벨는 소리, 기침소리들이외의 여러 종류의 소리로 자극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극으로 살 의욕마저 잃을 정도의 심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게 자극을 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고의적 행위는 부정하고만 있습니다. 4년에 걸친 이러한 자극은 제게 너무나 괴롭게 고통스러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중략)

부디 저의 탄원을 들어주시어 악랄하고 잔인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 외엔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들의 행위를 밝혀주시고 고소장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소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자체가 논리성을 결여한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징 투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어쩌면 그들의 상징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적다.

우리에게 80년대는 무엇으로 남았는가

고문 피해자들의 호소

고문도 받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의식

보통 사람들의 의식, 보통 사람의 의식을 뛰어넘는 상징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이란

왜 이들의 문제는 중요한가

전자파가 24시간 괴롭힌다.

유신 때는 중앙정보부, 5공때는 보안사, 6공에서는 안기부, 지금은 정체불명의

미군과 경찰만 보면 폭발한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과 경찰이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고문을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 또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1. 어떤 물질에 의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파리든가, 약물 등
 2. 노동자, 경찰의 미행을 실제로 당한 적이 있던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피해망상증이 나타난다.
 3. 정치상황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인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퍼시키트(박해자), 메스컴의 영향,

유신-중정, 유신이전-간첩,

중정-보안사-안기부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피해를 당했던 감정이 현실화된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말하고 싶다. 비논리적인 말에 대한 거부는 적대감으로 표시된다.

존중해줘야 할 것은 당한느 감정은 분명한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감정이다.

피해 유형-비슷한 것 고름. 모든 사람이 피해의식을 느낄만한 주제를 갖는다. 사회적인 간념이나 피해의식-야간 사람일수록 심하다.

이는 오해에서 나온다.-자기보호본능 정부는 권위적인 것이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피해의식은 아버지나 어머니와 비슷하다.

이런 때 대체물이 필요한데-누군지 모른다는 것

치료법: 약물요법-도파민, 노해파민

병이 굳어서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체계화되고 논리적이 됨.

여자 환자-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피해망상증환자를 위한 대책지를 만들어야 한다.

정신과적인 동물을 줄수 있게끔

집단치료적인 기법은 환자들끼리의 사회성 제고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의학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이들은 그러나, 자신들은 지극히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한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외면하고 만다. 이들은 정신과 의사를 불신한다. 자신들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생각이다. 이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지루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필요가 있다.

“고문피해 문국진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지법 원고승소판결

서울지법 민사 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폭행을 당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국진(35·연세대 철학과 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억 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22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없던 문씨가 경찰에서 3일 동안 잠을 못잔 채 조사를 받은 뒤부터 증세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 조사 당시 문씨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경찰은

오히려 문씨를 폭행하고 독방에 가둬 병을 악화시킨 만큼, 국가는 수사공무원의 위법행위로 문씨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 대한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소멸시효의 경우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종태 기자

2021. 1. 4. 월

국가 배상판결 받아낸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

“인간 파괴하는 고문 사라져야”

김인현 기자

“사실 뜻밖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4일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질환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1억4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문국진(35)씨의 부인 윤연옥(33)씨는 가녀린 웃음을 지어냈다.

윤씨가 문씨를 처음 만난 것은 5공이 막바지로 치닫던 85년 말 께. 당시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 현장 진출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만난 문씨는 활달하고 우스개도 잘 하던 사람으로 윤씨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문씨를 다시 만난 것은 88년. 그러나 이미 문씨는 예전에 윤씨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전화에 도청장치가 돼 있다” “누가 나를 죽이려는지”는 등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이미 정



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문씨가 86년 말 경찰과 구치소에서 당한 가혹행위 때문이었다. 구치소에서 문씨를 처음 치료한 국립정신병원 의사 배기영씨에 따르면 경찰에서 발병한 문씨의 증세는 구치소에서 결정적으로 악화됐다.

89년 10월 결혼 1년여만에 다시 병이 재발한 문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윤씨의 몸속엔 7개월된 해인(6·여)이가 자라고 있

었다. 그리고 해인이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병원에 입원한 아빠를 ‘면회’해야 했다. 문씨는 지금도 고려대구로병원에 입원중이다.

“경제적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위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건 사회에서 한몫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고문으로 인해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윤씨는 “배상금은 모두 남편의 치료비 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돋고 싶다고 했다.

“고문은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개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고문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하면서 공권력이 발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이나 다른 이들이나
<이들이나 다른 이들이나>

95. 5. 5 동아일보 (29면)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국가서 1억4천만원 배상

서울지법 「86년 시국사범」에 승소 판결

(재판장 成文鋪 민사합의부
서울지법 부부장판사) 13부
는 4일 시국사건으로 수
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후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
는 文國鎮씨(35)가 국기를
는 文國鎮씨(35)가 국기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6년 서울 청량리 경
찰서가 文씨를 조사하면서
3일간 징지를 두우자 않음
등 가혹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文씨가 밝작증세를
보였는데도 경찰이 필요로
1억 3천 9백여 만 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가는 文씨에

文씨는 그후 결혼하고 문후유종으로 계속 정신질환을 앓아 왔다며 93년 월국가를 상대로 2여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文씨는 86년 3월 당시
치안로부에서 「수사중이던
문화운동 단체 「보이디자
사전」과 관련해 10월 자
아오다 갈등해 수사를 받았을
었다. 기숙수 예처를 봤다.

95. 5. 7

한국기

‘고문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

고문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아직도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우리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 지난 86년 당시 차안본부에서 수사하던 이른바 ‘보임 다산사건’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폭행을 당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국진(35·연세대 철학과 졸)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는 문씨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7년 1월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그 해 6월 민주항쟁의 불길을 냉긴 박종철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의 책임을 인정한 93년 7월14일의 서울고법의 ‘신원권 인정’ 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번 서울지법의 판결에 주목하는 까닭은 고문이 뿌리뽑히지 않은 우리의 현실 때문이다.

한때 우리 언론은 ‘고문’을 ‘가혹행위’로, ‘성고문 사건’을 ‘성추행사건’으로 보도하도록 강요받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에 비해 오늘날 인권상황은 꽤 개선됐다고 볼 것인가. ‘고문’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김근태씨의 경우만 보자.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포를 공언했지만 아직도 꽁꽁 숨어 있다. 국민은 당국이 그를 놓잡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의혹을 품고 있다가 ‘안 잡는 쪽’으로 판단을 굳하고 있다.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의 경우도 그렇다. 관련 경찰 9명 중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조한경 경위만 현재 복역 중이고, 1명이 만기 출소했을 뿐 나머지 7명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있다.

정부는 입만 열면 한국이 국제경쟁력 11위 국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호언한다. 또 한국은 지난 4일 유엔 인권위원회로 재선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지역 고문수사 시비와 관련해서 “고문·강압수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안우만 법무장관의 지난달 21일의 다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문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고문피해자는 무조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둘째, 국가는 형법 125조(폭행·가혹행위)에 따라 고문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을 처벌하라. 셋째 고문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경우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라. 이것만이 ‘고문 없는 나라’로 가는 전름길이다.